

#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경부 51-4010 (전화번호 79 )	전경국정 21 조 2항 국장 전경사령
처리기간	63. 10	사
시행일자	63. 10	
보존연한		
보조기관	1 부국장	
과장	83. 11. 1	보안課長 井野村 長 高
계장	443	
기안책임자	공화신길	주
경유	각안참조	발신
수신		국장
참조		통세
제목	서울특별시 경찰관 파출소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	
제 1 안		
수신 : 내부결재		
제목 : 동 건		
파출소 신설(81년도 6개소) 및 치안 상황 변동으로 불합리한 경서 파출소등급을 현 심정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동규정을 별첨과 같이 개정로 자합니다.		
관인		
첨부 : 1. 개정 사유 1부		
2. 개정안 1부. 공.		
발송		

경부 51-4010-1453

제 2 안

수신 : 서울특별시장

참조 : 공 보 관

제목 : 서울특별시 경찰관 파출소 등급에 관한규정 개정 규정 시보  
개정 ~~요청~~

별첨과 같이 서울특별시 경찰관 파출소 등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개정 규정 1부. ~~끝~~

제 3 안

수신 : 수신처참조

제목 : 서울특별시 경찰관 파출소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규정서람

서울특별시 경찰관 파출소 등급에 관한규정이 별첨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업무수행에 활용하기 바람.

첨부 : 개정규정 1부. ~~끝~~

수신처 : 서과 61-72 서경 1-23 서태 1-11

## 1. 계정 사유

○ 파출소 신설(81년도 6개소) 및 처안 상황 변동으로 불합리한 파출소 증감을 현실정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여 경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계획 수립 및 인근경찰관 근무 성적 평가등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정 하고자함.



## 2. 주요골자

- 가급 183개소중 12개소를 나급으로
- 나급 235개소중 23개소를 다급으로 하향 조정



서울특별시 경찰관 파출소 등급 이 관한 규정 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경찰관 파출소 등급 이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경찰관 파출소에 대한 등급을 취정  
하여 인원, 배치의 적기, 업무 변동등 업무수행에 조준하여서 합리화  
하고 균형있는 경찰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파출소의 등급) 파출소의 등급(이하 "등급" 이라한다.)은 가. 나  
다음으로 구분하고 그 등급은 별지 제1호의 같다.

제 3 조 (조정기준) 등급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한 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범죄 발생현황 (행정범포함)
2. 각종 사고 발생 현황
3. 중요시설 기타 치안상 치안성 및 특수 지역
4. 면적, 인구, 유동 인구
5. 주민불포상황 (상가, 공장, 일반주택, 공동주택)

6. 파출소별 특성

7. 기타 업무 수행실적 및 치안 여건 변동

제 4 조 (조정시기) 등급은 파출소의 신설, 폐지, 기타 치안여건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조정할수 있다.

제 5 조 (조정권) 등급조정은 경찰서장이 직속한 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경찰국장이 조정한다.

제 6 조 (조정절차) (1) 경찰서장은 등급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정치는 기본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정기간의 통계를 작성하여 경찰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경찰국장은 경찰서별 통계를 분석하여 등급을 결정하되 전반적인 치안상황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등급을 조정한다.

제 7 조 (정원기준등) 등급별 경찰관 정원각 파출소장의 직급 기준은 별지 제3호와 같다. 다만, 경찰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규칙(내무부훈령)에 따라 정원의 증원은 감축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 8 조 (장비 및 업무지원) 파출소의 장비 및 업무지원은 이규정은 활용하되 당시의 치안 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 9 조 (등급별 기준의 활용) 경찰국, 경찰서 및 경찰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계획을 세우거나 최근 경찰관 근무성적 평가서 제2조 및 의한 등급을 활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과출소종류표

구분	과출소수	종류		
		가급	나급	다급
합계	551	171	224	156
중부	17	6	6	5
		영획, 충무로 2가, 령동, 을지로 2가, 을지3가, 을지4가	을지로 6가, 충무로 4가, 주지, 회계로 2가, 회계로 6가, 충무로 5가	청계 6가, 장충, 장충공원, 묵정, 필동
종로	21	11	4	6
		종로 3가, 관수, 태교, 종로 2가, 종로 1가, 광학문, 신문로, 전촌, 익룡, 넥자, 호자	통의, 시직, 시종로, 전선	공정, 제동, 소경, 옥인, 가회, 송현
남대문	15	7	5	3
		역전, 남대문, 남대문로 5가, 을지, 남대문로 3가, 옥장, 노동	태평, 회현, 동자, 남묘, 남산	후암동부, 후암서부, 후암북부
서대문	26	9	13	4
		신촌, 적소문, 태현, 영현, 서대문, 은파촌, 단산, 홍적, 고담	익주로, 독립문, 태산, 연희, 고동, 전연, 봉양, 중림, 용연, 연공, 연서, 만리, 평창	봉성, 구기, 세검, 연희 1

		8	6	5
동덕분	13	종로4가, 종로5가, 종로6가, 창경, 동묘, 묘세, 신설, 덕산	원남, 이화, 병문, 용두 용남, 청계8가	송림, 창신, 동송, 이화, 창덕궁
동산	25	11		6
		한남, 이태원, 북악산, 한강, 북한강, 삼각지 덕선, 시장, 남영, 동부 이촌, 청파	서빙고, 용관, 보광, 용이, 용산, 호창, 원2 원4	갈월, 서계, 원1, 도원 문암, 보문
성북	24	7	11	
		길음, 돈암, 동선, 청수 삼선, 정릉, 안동	성암, 북악, 보문, 경동 교사, 신선, 북선, 신동 두, 성북, 양광, 언덕	송덕, 지기1, 인수, 안서, 문이, 태담
청량리	27	7	12	8
		영전, 남영동, 재기, 청량리, 휘경, 희기, 이촌	남장안, 용암, 신재기, 전동, 신명안, 홍릉, 관 신리, 장안, 신당, 수문, 경훈, 신이촌	기곡, 동담, 천국, 배봉 동덕분, 여흥 남담 북덕분
북촌	25	11	9	9
		서현, 카운, 서산, 도화 양덕, 태릉, 동교, 서교 학정, 연남, 상림	신수, 광원, 금성, 상수 양학진, 염피, 상암, 공덕, 삼덕	신덕, 신흥, 노고산, 시강, 약현, 염산, 연봉 동현, 성산

		6	5	3
영동로	14	중양, 영2, 영3, 덕전, 여의도, 큰뚝,	양평, 운중, 향산, 양2, 담중	문수, 남강, 도림
성동	30	9	12	9
		홍인, 영비, 무각, 상왕 동곡, 물원, 홍익, 가장 금호	금남, 약수, 연인, 송현 행동, 하왕, 금수, 옥수 행담, 사근, 정구, 문화	석마, 당현, 동학, 금북, 신당, 유락, 응봉, 금옥, 대원
노량진	26	7	9	10
		노량진, 반본, 동작, 장성, 신양, 신관, 신길	대길, 영수대, 상도, 상 도3, 대방, 북대방, 신길 4.노2 백둔	송신, 남관강, 관수 혹석3, 혹석2, 상중, 상도4, 신동, 신길5, 신영
동부	23	0	11	6
		화양, 상수2, 상수3, 송 정, 광미장, 상수1	신노유산, 노유산, 구리 군자, 자양1, 덕공원, 신자양, 중곡1, 중곡2, 중곡3, 용담	농동, 광장, 자양2, 중 곡4, 등구역, 남구역
서부	28	9	11	8
		가작, 남계왕, 등안, 양북, 구파밭, 은평, 추성, 불광, 감현,	대조, 등남, 봉동, 봉산, 홍은, 진관, 약촌, 연신, 구산, 흥남, 북가좌	역마, 대광, 연서, 신서 상신, 홍서, 신가, 북암



북부	25	6	12	7
		노이, 삼양, 수유 1, 광산, 신우이, 월계	신양, 송기, 수유 1, 도봉, 도봉 2, 미이 3, 도봉산, 월계 2, 번동, 방학, 수락	번, 수유 3, 방학 2, 번리, 상문 1, 상계 1, 상문,
남부	26	6	13	7
		시흥, 난우, 독산, 신림 3, 시흥 2, 가리봉 3	가리봉 1, 시흥 1, 송죽, 독산 2, 문성, 가리봉 2, 3공단, 구로 3공단, 신대방, 신림 4, 신림 7, 난우	독산, 시흥 4, 독산남, 두산, 독산 3, 독산 4, 대선
태릉	28	7	7	7
		봉황, 연 1, 연목, 연 3, 공 1, 중화, 상 2	목 1, 중 2, 망 1, 용카, 망우, 북동, 연 6, 망 3, 연 5, 연 4, 불암, 상봉, 공릉	상 3, 신내, 중 2, 공 2, 하계, 상 4, 상계, 신상계,
강남	25	9	10	6
		논현, 덕삼, 신사, 잠원, 신반포, 남 3도, 서초 2, 잠원, 상동	반포, 양구정, 삼릉, 은마, 덕치, 양재, 한양, 신릉, 서초, 내곡	반포 2, 잠수, 대왕, 계 2, 삼성, 삼성
관악	27	5	12	10
		남성, 불천, 사당, 신림정릉	방배 2, 방배, 신곡, 불천 6, 불남, 온천, 불천 10, 당곡, 불천 7, 사당 5, 고관관악	신림 7, 신림 1, 불천 9, 남현, 불천 5, 능내, 합심, 불동, 사당 4, 사당 3

		7	9	9
광서	25	양공, 신정1, 신월, 공향 복동, 신정, 은향	화곡, 신월, 농안, 복동 동촌, 화곡3, 방화, 반곡 발산	신곡, 직합, 신월3, 화곡 1, 화곡4, 화곡5, 양서, 계화, 가양
광동	28	7	12	9
		천호-, 길농, 심내2, 천 포3, 잠1, 송파1, 잠전	암사1, 령일, 동남, 밤이 송파, 심내1, 천호1, 가락, 마천2, 잠3, 기역, 둔촌	잠4, 마천1, 암사3, 신촌 암사2, 잠5, 하일, 잠2 상일
중합	25	6	13	6
		송진, 삼기, 장뒤, 동월 율곡, 중암,	월곡, 석1, 창문, 국양, 장3, 남중, 석관, 기4, 장수, 상월, 길3, 위광 은양	미양, 석양, 송백, 미아 2, 덕양, 미릉
구로	18	4	8	6
		대림2, 구로, 대림, 오류	오봉, 구로5, 고척, 개 봉, 동구, 오류2, 남구 신도림	신곡, 고척2, 계령, 운수 대림3, 계동

"물 제2조"



파출소 등 급수정차준

순 번	파출 소 명	영리 발생			종 묘 사 실	면 적	인구		주인 보유 상황				비고	
		형사법	형량법	사건			성 수	유동 인구	상 가	공 장	현 주 거 주	영 주 거 주		

" 별지 제 3 호 "



서울시 등교별 정원 및 서울노장아침집

등교별 \ 계구별	계	정원	정원확정	정사	정장	노장	비고
1 교	16	1			3	12	
4 교	13		1		3	9	
4 교	13			1	3	9	

1184